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"임기제공무원"이라 한다)을 임용할 수 있으며,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, 다만,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

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)에 따르면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다음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.

※ 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따른 8급 임용자격

-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②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③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1. 과도한 공고기준 부적정

강원도에서는 2015. 11. 27. ‘○○○권미디어홍보 분야’ 일반임기제 지방행정8급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임용자격 조건 중 규정과 다르게 ‘고등학교 졸업한 후 2년 이상으로’, ‘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’ 으로 과도하게 공고하였다.

2. 근무경력 반영 부적정

강원도에서는 동 임용시험 공고에 따라 ○○○ 등 3명이 응시하여 2015. 12. 14. 서류전형, 2015. 12. 22. 면접시험을 거쳐 2015. 12. 30. 최종 합격자로 ○○○을 결정하였으나

○○○의 응시원서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,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2012. 5. 29.부터 2013. 4. 21까지 ○○○○○(주)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해야 함에도

합격자의 ○○대학교 재학시절 중 ○○○○공사 ○○협력지사 주관으로 실시한 단기산학현장실습기간(2011. 4. 29 ~ 2011. 6. 30)을 관련분야 근무경력(2016. 9. 22, ○○대학교에서 이력 취득 확인 서류 제출)으로 부당하게 포함·인정하였다.

그 결과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미만자가 합격된 결과가 초래되었다.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앞으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